

광주~원주 고속도로
민간 투자 사업
변경 실시 협약



2013. 11. 11.



국 토 교 통 부

제이영동고속도로(주)

변경 실시 협약

국토교통부(이하 “주무관청”이라 한다)와 제이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(이하 “사업시행자”이라 한다)는 2008년 5월 30일 광주-원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(이하 “실시협약”이라 한다. 이후 변경된 실시협약 포함)을 체결하였던 바, 동 사업을 진행하던 중 해지시지급금 산정방법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<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-250호, ‘10.12.23. 시행>에 따라 실시협약의 일부 조건을 변경하기로 하여 2013년 11월 11일에 나음과 같이 본 변경실시협약(이하 “변경실시협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제 1 조 정의



본 변경실시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본 변경실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, 실시협약에서 정의된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.

제 2 조 해지시지급금 산정

실시협약의 <별표 13>(해지시지급금)을 본 변경실시협약의 <별표 1>(해지시지급금)로 변경한다.

제 3 조 실시협약의 효력변경

실시협약의 규정은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 변경실시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하며,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대로 변경된다. 다만, 이 변경실시협약 체결일 현재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실시협약에 따라 발생한 본 협약당사자간의 권리·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제 4 조 변경설시협약의 효력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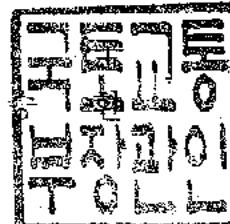
이 변경설시협약은 이 변경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이 변경설시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 및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적법한 자료 하여금 아래 기재 일자에 이 변경설시협약에 각자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3년 11월 11일



대한민국
국토교통부장관서



제이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
대표이사 박

